

2024년 제5차 공능유적본부(덕수궁관리소) 공무원 등 근로자  
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공무원 등 근로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9일

공능유적본부장

□ 최종합격자

채용분야	직급	최종합격자		
		응시번호	성명	비고
시설물관리원 다급	공무직	시설물관리원(다급)-01	김○○	
		시설물관리원(다급)-02	장○○	
	공무직 또는 촉탁직	시설물관리원(다급)-04	전○○	
시설물청소원(단시간)	공무직	적격자 없음		
전산원	공무직	적격자 없음		
안전관리원(야간) * 감시적근로자	공무직 또는 촉탁직	안전관리원(야간)-01	남○○	
직영소방원(다급) * 감시적근로자	공무직	적격자 없음		

□ 예비합격자

채용분야	직급	예비합격자		
		응시번호	성명	비고
시설물관리원 다급	공무직 또는 촉탁직	시설물관리원(다급)-07	이○○	
안전관리원(야간) * 감시적근로자	공무직 또는 촉탁직	안전관리원(야간)-04	정○○	

※ 예비 합격자는,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정하며, 예비 합격 인원은 적격인원에 따라 적거나,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. 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함)

## 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1.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**2024.5.31.(금) 17:00까지** 덕수공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채용신체검사서 1부 [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가능]
  - 나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(\* 붙임 1 서식 작성)
  - 다.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(\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  - 라.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- 마. 사진(반명함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
  - 바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(\* 붙임 2 서식 작성)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(02-751-07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
2. 결격사유 확인서 1부

[붙임 1]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(덕수궁관리소)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 123456-1234567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○○○ 년 ○○ 월 ○○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 ○○○○.○○.○○.

전화번호 : 010-○○○○-○○○○

#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공능유적본부 공무원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공능유적본부장 귀하